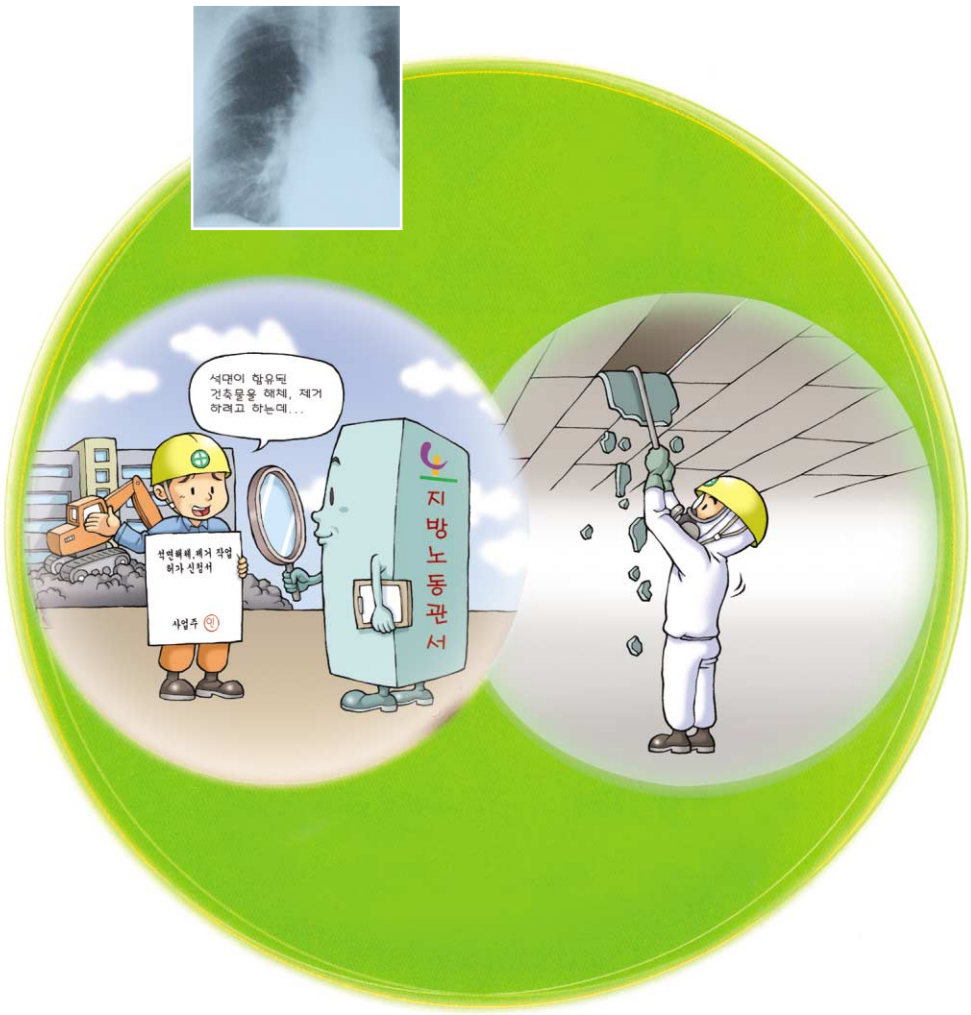
산업안전 홍보물 2006.3.15 4:42 PM 페이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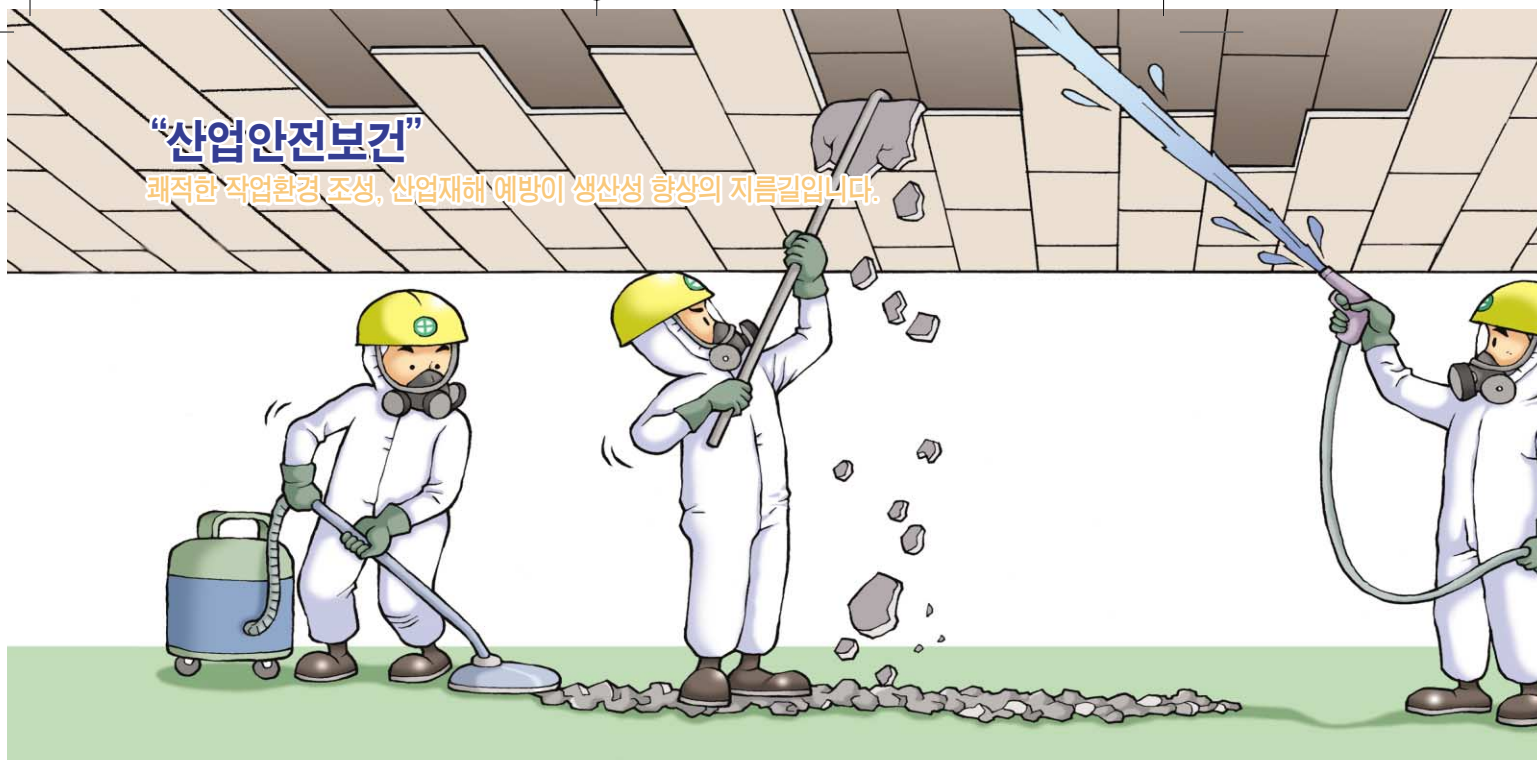
「건축물 철거작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석면 해체 · 제거작업 허가제도 안내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산업안전공단
www.kosha.net



"산업안전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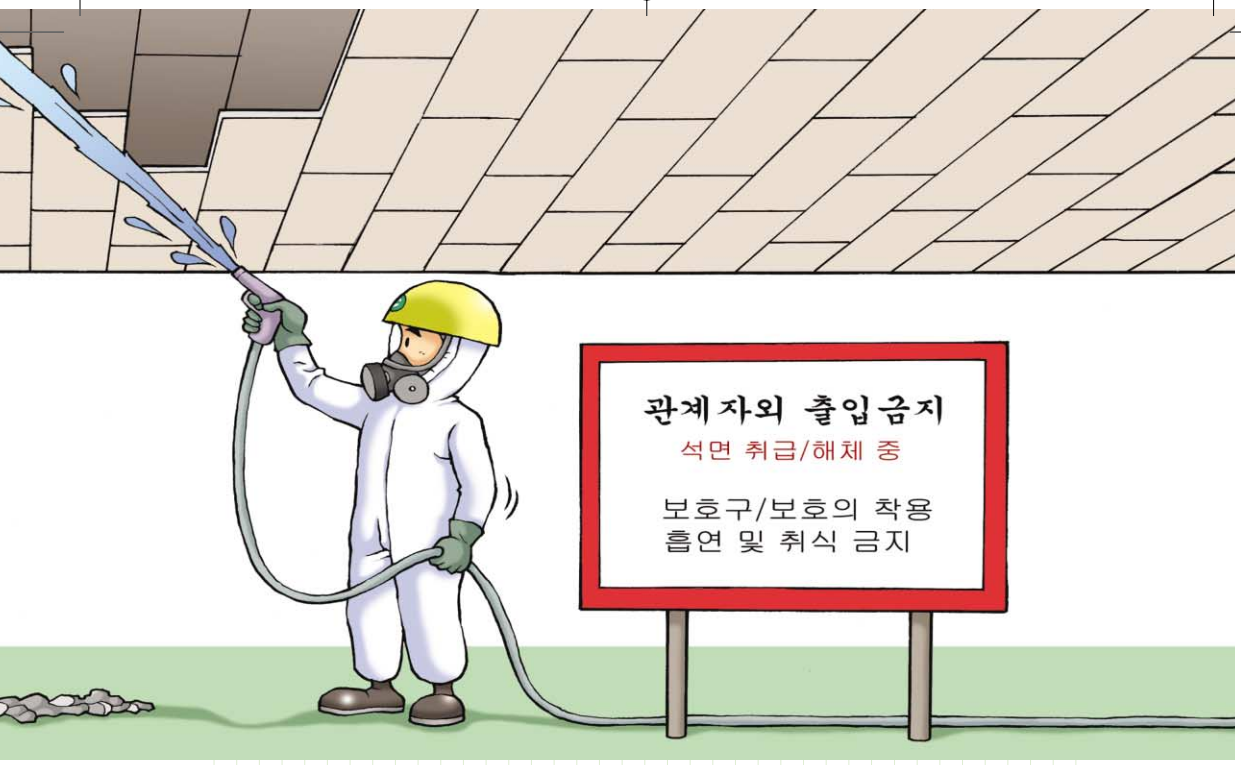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 2005년 10월 20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으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 석면 함유 여부 등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연락처는 뒷 부분에 첨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 ·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www.molab.go.kr



◆ 목 차 ◆

1 『석면』이란 무엇인가요?

2 『석면』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3 『석면』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4 건축물 및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나요?

5 석면 함유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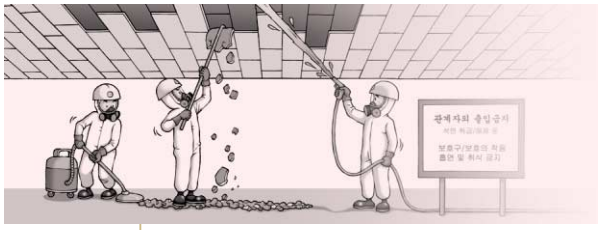
7 석면 해체 · 제거작업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8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철거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9 『석면』과 관련된 법령 및 관련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별첨] 전국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연락처

www.kosh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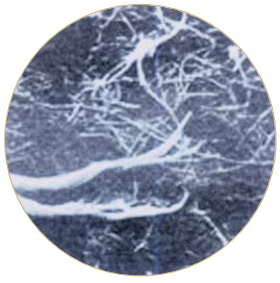


1 『석면』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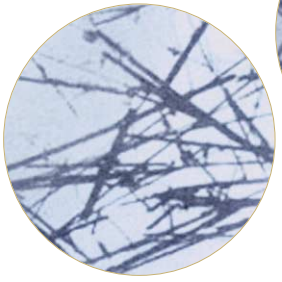
○ 석면(石綿, 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蛇紋石) 및 각섬석(角閃石)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입니다.

2 『석면』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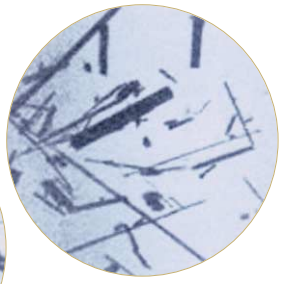
○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 등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 1월부터 제조등의 금지물질(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및 사용 금지)로 규정되었으며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은 2003년 7월부터 금지되었고, 백석면은 '91년 7월부터 허가대상물질로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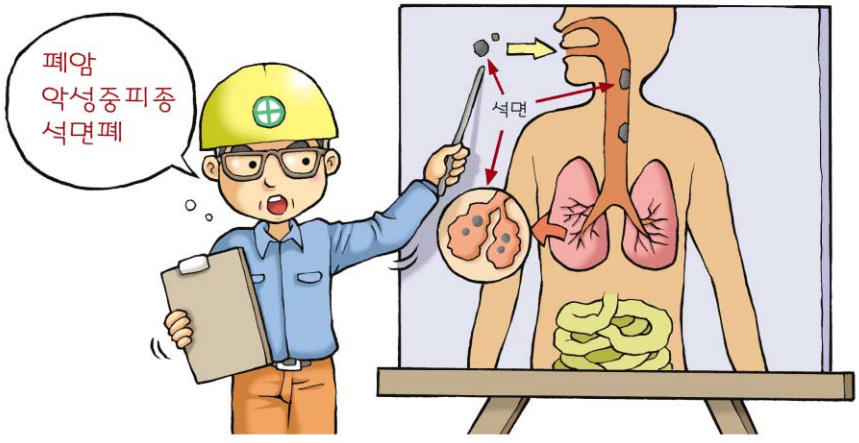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재),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에 이용됩니다.

3 『석면』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표 1〉 석면과 관련된 질환

질 병 명	내 용
폐 암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악성중피종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석 면 폐	석면분진 흡입시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





4 건축물 및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나요?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건축재료에 사용되게 됩니다.

1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사용하고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도 사용

2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석면포를 사용

3 **기타 수장재** : 시멘트판 또는 트랜사이트(transite), 지붕용 골슬레이트,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벽판 등으로 사용

4 **기타** : 플랜지(flange)이음에서의 가스켓(gasket), 석면시멘트관,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등

○ KSL 규격에 의한 일부 건축자재중 석면함유제품의 종류와 석면 함유량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2〉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물질(KSL 규격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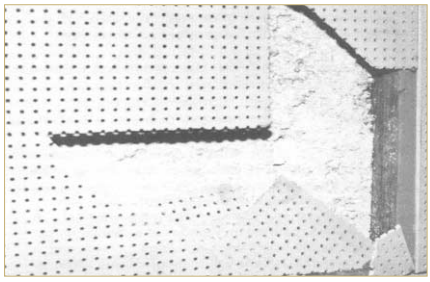
규격명	관련규격	제품	용도	석면함유량
섬유강화 시멘트판	KSL 5114	석면 스레트	지붕재	10±3%
		석면천장재	천장재	5±1%
		석면칸막이(밤라이트)	칸막이	8±2%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F 3210	석면칸막이 (나무라이트)	칸막이	8±2%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KSF 4735	석면벽재	외벽재	10±2%
석고 시멘트판	KSL 5509	석면천장재	천장재	5±1%

※ 상기 건축자재 이외에 보일러 배관, 온수탱크 급수관 등에 보온 · 단열재로서 석면이 함유된 석면포가 사용되기도 함

〈그림〉 석면 함유 건축자재



〈보온판 및 골슬레이트〉



〈흡음재〉



〈철골내화 피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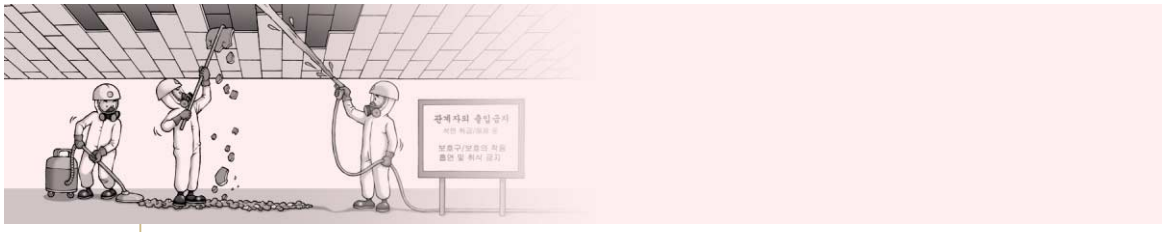
〈공조덕트 단열재 미장〉



〈석고시멘트판 천정재〉



〈석면칸막이 밤라이트〉



5 석면 함유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사업주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기 이전에 석면함유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는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 X선 회절법 등이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가능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3〉 석면 분석 가능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분석가능방법
가톨릭대 의대 산업의학센터	02-3779-14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편광 현미경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02-740-8883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편광 현미경법
ETS 컨설팅	02-553-48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98-30 현진빌딩 6층	편광 현미경법
대한산업보건협회	02-863-9322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 테크노벨리 205호	위상차 현미경법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042-869-034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8	전자 현미경법

※ 상기 기관 이외에 분석이 가능한 석면관련 컨설팅 기관 등도 있음

6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 · 제거작업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인터넷 참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 · 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 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허가대상 석면해체 · 제거작업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작업

○ 허가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 · 제거작업허가신청서(첨부 참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 ·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사업주가 석면 해체 · 제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7 석면 해체 · 제거작업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2장제6절에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1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7조)

※ 사업주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 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



②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8조)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9조)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음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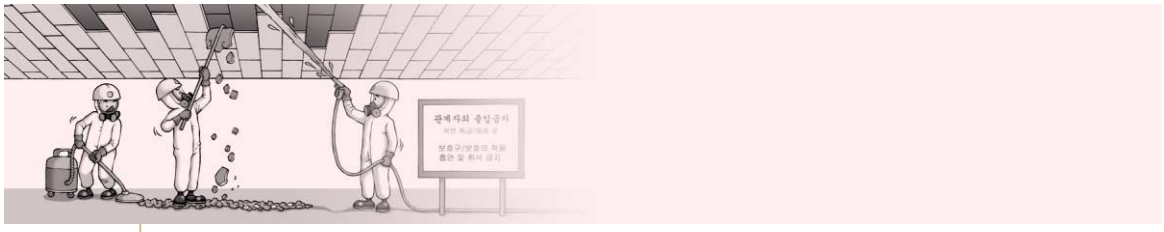


〈장소의 밀폐〉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④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0조)



〈폐기물은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

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1조)



〈고성능필터(HEFA filter)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8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철거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 ·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9 『석면』과 관련된 법령 및 관련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석면 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2 백석면 등 기타석면의 제조 · 사용 또는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4 석면 취급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5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 · 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6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 · 사용 또는 해체 · 제거하는 작업 도급금지(법 제2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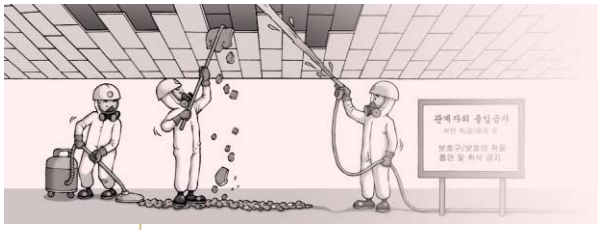
7 석면 제조 · 사용작업 및 해체 · 제거작업의 조치 기준〔제227조내지241조〕)

○ 건축법 에서 석면과 관련하여 개정('05.10.20)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첨부 참조)의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건축물 등 철거시 발생되는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 폐기물」로서 동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02-2110-6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신설 2003.7.7, 2005.8.1〉 (앞쪽)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업	②사업자 명칭			
대행자	③주소			
	④대표자 성명		공사금액	
⑤사업	⑥사업자 명칭			
피시행자	⑦주소			
	⑧대표자 성명			
⑨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작업내용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입인지첨부란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취급예상 석면량 및 함유율 등에 관한 사항 서류 포함)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관내 : 7,900원 ◦관외 : 3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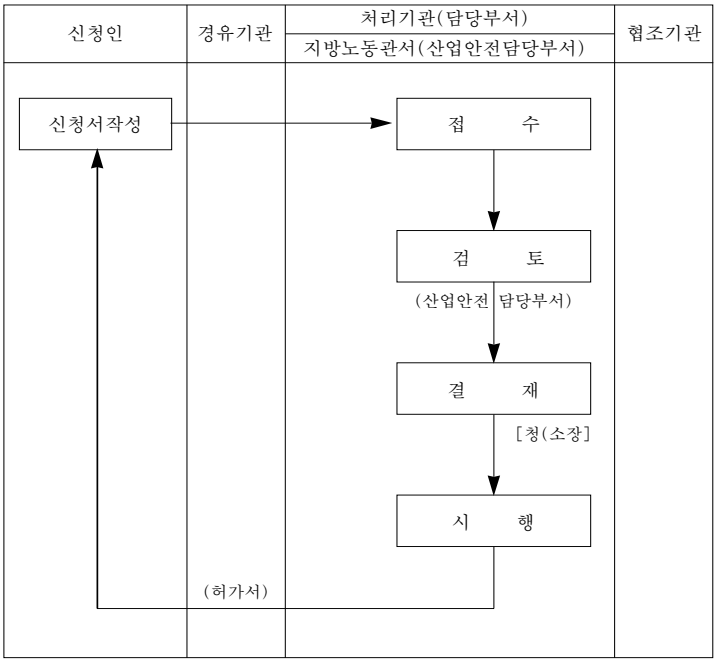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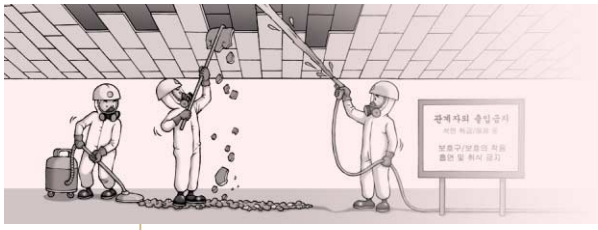
※ 기재요령

1. 사업대행자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기재함
2. 사업피시행자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기재함
3. 작업내용에는 석면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개·보수로 구분하고, 작업방법에는 작업기계·기구와 명칭, 수작업 또는 기계·기구 사용작업 여부를 기재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3.11.21, **2005.10.20**〉

(앞쪽)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 치				
	④용 도		⑤구 조		
	⑥건축물수		⑦연 면 적		
	⑧세 대 수				
소유자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 소				
공사 시공자	⑫성 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 소				
철거 또는 멸실	⑮사 유				
	⑯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⑰석면함유여부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없음( )**	
⑱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 (등록번호 :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 (면허·지정·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 (등록번호 :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분 야	자격증(자격번호)		주 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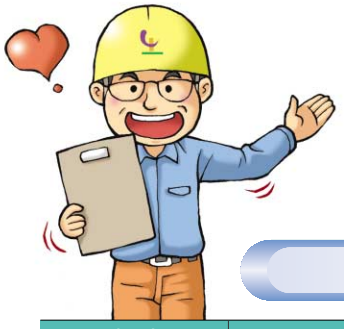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70g/㎡)

(뒤쪽)

근거법규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없 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1.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www.molab.go.kr
www.kosha.net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명 칭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 · 종로구 및 성북구	2250-5770~81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	598-1671~3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및 강동구	2142-8871~7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 마포구 · 서대문구 및 은평구	2077-6170~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강서구 및 양천구	2675-9101~2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도봉구 · 강북구 · 중랑구 및 노원구	963-0145~6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구로구, 금천구 및 동작구	3281-5021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고양시 · 파주시 · 양주군 · 연천군 · 포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51-8851~2
춘천지방노동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 홍천군 · 인제군 · 화천군 ·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033)258-3580~4
강릉지방노동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양양군 · 고성군	033)646-2515~6
태백지방노동사무소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033)552-8603~4
원주지방노동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033)744-3370
영월지방노동사무소	강원도 영월군 · 평창군 및 정선군	033)374-1724~5
부산지방노동청	부산광역시 중구 · 동구 · 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남구 · 부산진구 및 연제구	051)851-7420~1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 금정구 · 수영구 및 기장군	051)552-3025~6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부산광역시 북구 · 사상구 및 강서구	051)305-3511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경상남도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 창녕군 및 함안군	055)289-6609~10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울산광역시	052)228-1881~9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 밀양시 및 양산시	055)387-0805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 사천시 · 의령군 · 합천군 · 거창군 · 산청군 · 하동군 · 함양군 및 남해군	055)752-1752
통영지방노동사무소	경상남도 통영시 · 거제시 및 고성군	055)643-2467
대구지방노동청	대구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수성구 · 달성군, 경상북도 영천시 · 경산시 및 청도군	053)744-0049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대구광역시 서구 · 달서구 ·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 칠곡군 · 고령군 및 성주군	053)321-6712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 경주시 · 영덕군 · 울릉군 및 울진군	054)275-6875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경상북도 구미시 · 김천시	054)456-4676~7
영주지방노동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 상주시 · 문경시 및 봉화군	054)634-0913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 예천군 · 의성군 · 영양군 및 청송군	054)859-0009
경인지방노동청	인천광역시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및 옹진군	032)421-4721~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및 강화군	032)556-0933~7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 평택시 · 오산시 · 용인시 · 안성시 및 화성군	031)259-0251~3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323-9823~4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광명시 ·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및 군포시	031)463-1150~7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031)412-1970~8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 하남시 · 이천시 · 광주군 · 양평군 및 여주군	031)749-0270

명 칭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광주지방노동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화순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장성군 · 영광군 · 함평군 및 장흥군	062)227-3814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 남원시 · 정읍시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완주군 · 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3391~8
익산지방노동사무소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063)839-0031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및 고창군	063)450-0052~3
목포지방노동사무소	전라남도 목포시 · 무안군 · 영암군 · 강진군 · 완도군 · 해남군 · 진도군 및 신안군	061)283-7814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고흥군 및 보성군	061)651-6885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도	064)755-0453~4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금산군 및 연기군	042)480-6301~9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 청원군 · 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 · 옥천군 및 영동군	043)299-1310~9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 예산군 및 당진군	041)560-2861~9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 제천시 · 음성군 및 단양군	043)851-4545
보령지방노동사무소	충청남도 보령시 · 서산시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부여군 및 태안군	041)936-4545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연락처

명 칭	관 할 구 역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초구 · 성동구 · 광진구 · 송파구 · 강동구 · 영등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관악구 · 구로구 · 금천구 및 동작구	02)8281-671~4
인천광역지도원	인천광역시	032)5707-220
부천산업안전보건센터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032)6806-533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 종로구 · 성북구 · 용산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은평구 · 동대문구 · 도봉구 · 강북구 · 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40~4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 평택시 · 오산시 · 용인시 · 안성시 · 화성군	031)2597-131~5
성남산업안전보건센터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031)7853-321~2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고양시 · 파주시 · 양주군 · 연천군 · 포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19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광명시 · 안양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2~6
강원지도원	강원도(철원군 제외) 및 경기도 가평군	033)2438-312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033)6443-82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80—580~6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055)3726-914~5
대구광역지도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 · 칠곡군(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 고령군 · 성주군 · 영천시 · 경산시 및 청도군	053)6090-541~7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052)2260-523
경북동부지도원	경상북도 포항시 · 경주시 · 영덕군 · 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22~8
경북북부지도원	경상북도 구미시 · 김천시 · 영주시 · 상주시 · 문경시 · 봉화군 · 안동시 · 예천군 · 의성군 · 영양군 · 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면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501-122~3
경남지도원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제외)	055)269-057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고흥군 및 보성군 제외)	062)9498-731~5
대전광역지도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금산군 · 연기군 · 보령시 · 서천군 · 청양군 및 부여군	042)6205-631~4
충북지도원	충청북도	043)2307-141~4
충남지도원	충청남도 천안시 · 아산시 · 서산시 · 예산군 · 당진군 · 홍성군 · 태안군	041)5703-421~30
전북지도원	전라북도	063)2408-522~6
전남동부지도원	전라남도 여수시 · 순천시 · 광양시 · 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32~4
제주지도원	제주도	064)7488-326

산업안전 홍보물 2006.3.15 4:21 PM 페이지20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빌딩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홈페이지 : www.molab.go.kr
전화 : 02)504-2054~5
팩스 : 02)503-4491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구산동 34-4)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화학물질관리팀
홈페이지 : www.kosha.co.kr
전화 : 032)5100-718~724
팩스 : 032)518-6486